

## 조문 별 제·개정 이유서

◇ 행정규칙명: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 · 개정 이유: 피난사다리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필요 등 기술기준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자 안전을 위한 구조사항 신설(안 제3조제7호)

나.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동작횟수 규정(안 제6조제5호)

다. 최대사용하중 상향 (안 제8조제1호)

라. 시험적용하중 상향 (안 제8조제4호)

마. 올림식사다리 토크시험 별도 신설 (안 제8조제8호)

바.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강도시험 강화 (안 제8조제9호)

사. 미끄럼시험 신설 (안 제8조의2)

아. 내식시험 강화 (안 제10조의2)

자. 표시내구성시험 신설 (안 제10조의4)